

비평논문

정치적 타협과 저항*
-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 -

이 영 립

- I. 머리말
- II. 이기적인 귀족 집단인가 국민의 대표인가
- III.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관계
- IV. 법관들의 지위와 삶
- V. 18세기의 정치적 갈등: 이데올로기 논쟁과 권력다툼
- VI. 맺음말

I. 머리말

샤토브리앙이 “귀족이 혁명을 시작하고 평민이 그것을 성취했다”고 언급했듯이,¹⁾ 재정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1788년에 정부로부터 삼부회 소집을 다짐받음으로써 혁명으로 가는 문을 연 것은 법복귀족의 아성인 파리 고등법원이었다. 비단 혁명기 전야뿐 아니라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가 정치위기를 겪을 때마다 늘 그 핵심에 있었다. 18세기에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정치적 갈등은 예외 없이 파리 고등법원과 정부의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1648년 프롱드난을 일으킨 것도 파리 고등법원이었고 앙리 4세의 왕위계승을 부정하며 대귀족 및 파리 시민들과 더불어 가톨릭 동맹을 주도한 것도 파리 고등법원이었다. 이렇듯 프랑스 근대사에서 파리 고등법원은 줄곧 정치행위에 앞장서고 격렬한 정치논쟁을 벌였다. 그럴 때면 파리의 심장부인 시테섬에 위치한 파리 고등법원 건물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법관들을 ‘민

* 이 논문은 인문한국지원사업(과제번호 KRF-2009-362-A00001)의 지원을 받은 것임을 밝힌다.

1) G. 르페브르, 『프랑스 혁명 1789년』, 민석홍 옮김(을유문화사, 1976), 9쪽에서 재인용.

중의 지팡이’, ‘인민의 수호자’ 혹은 ‘조국의 아버지’라고 외치는 함성이 시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런 의미에서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 군주정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얼굴이다.

역사상 프랑스 군주정은 전제정이라기보다는 제한군주정으로 간주된다. 교회가 군주정 밖에서 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파리 고등법원은 군주정 내부에서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은 국왕 참사회처럼 국가 정책에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던 정치기구가 아니다. 파리 고등법원은 13세기 중엽 왕이 방계왕족, 고위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중신들과 함께 재판권을 행사하던 왕실법정(Curia Regis)에서 파생되었다. 이후 상고법원으로서 4개의 최고법원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이후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고등법원은 혁명기까지 파리 외에도 지방 도시 12곳에 존재했다.²⁾ 그렇다고 해서 고등법원의 역할이 단순히 사법적 영역에 그친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은 식량 공급과 가격, 시장, 출판물 통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 명령권을 행사했고 종교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정부의 과세 정책에 개입했다. 더구나 파리 고등법원은 명칭과는 달리 파리만이 아니라 전국의 3분의 1을 관할했다. 파리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지방 삼부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세인 타유세의 부과와 징수권을 보유한 징세구 지방들(Pays d'élection)을 포함했다.³⁾ 다시 말해 과거의 왕령지에서 출발해서 비교적 일찍이 왕국에 편입된 프랑스의 핵심 지역을 관할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파리 고등법원은 군주정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한 왕권강화의 도구이자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가 군주정과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로 점철된 이유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앙시앵 레짐의 역사에서 파리 고등법원이 강력한 행정군주정을 추구하는 왕실의 시도를 방해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법관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군주정을 희생시킨 장본인들로 여겨져 온 이유는 무엇인가?

파리 고등법원은 혁명의 열기가 한창이던 1790년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2) 1443년 툴루즈 고등법원을 필두로 지방 주요 도시에 차례차례 고등법원이 설립되었다. 고등법원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서는 이성재, 「구체제 시기 고등법원의 구성과 역할」,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69-104쪽 참조.

3) 북동부의 피카르디에서 남서부의 기엔 경계까지, 북서부 브르타뉴 경계에서 남동부 리옹까지를 포함한다.

사라졌다. 이후 혁명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역사가들의 관심은 자연히 앙시앵 레짐의 구조적 모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파리 고등법원은 그 모순의 대명사 처럼 여겨졌다. 이렇듯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는 오랫동안 프랑스 혁명의 그림자에 의해 왜곡된 채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상대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전통에서 자유로운 영·미 역사가들이다. 1960년대에 파리 고등법원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군주권과의 관계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리 고등법원이 군주권과 갈등을 벌이며 정치무대의 주역으로 활약한 18세기의 정치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했다. 1970년대 이후 역사가들이 파리 고등법원의 정치적 역할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이다. 특히 1750년대에 군주권에 도전한 파리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치 문화와 여론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파리 고등법원 연구는 프랑스 혁명의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한 수정주의 해석에 커다란 빛을 진 셈이다. 1990년대 이후 확연해진 정치사 부활의 추세 속에서 파리 고등법원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다.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갈등을 구체적인 역사 현실의 맥락에서 세밀하게 분석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대립관계로만 인식되어 온 둘 간의 복잡한 관계망이 드러나고 타협과 갈등으로 뒤엉킨 정치적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연구를 토대로 한 이 글에서는 우선 2장과 3장에서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를 역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이 규명될 것이다. 첫째 사법기구인 파리 고등법원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둘째,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과 도전은 과연 궁극적으로 군주권을 부정한 것일까? 이어 4장에서 이 글의 핵심인 18세기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충돌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파리 고등법원 법관들의 정치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5장에서는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이데올로기 논쟁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앙시앵 레짐 하에서 파리 고등법원의 성격과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II. 이기적인 귀족 집단인가 국민의 대표인가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랫동안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에 집착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굳어진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법복귀족의 전형인 파리 고등법원의 법관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면세특권을 누렸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다. 전통해석에 의하면 법관들은 계급 이익의 수호자일 뿐이다. 역사가들은 파리 고등법원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법관들을 18세기 후반 정치사회적 위기를 악화시킨 귀족의 배타주의와 봉건적 반동의 앞잡이로 몰아붙이며 정부 개혁의 방해자로 간주했다. 개혁을 주도한 계몽된 정부대 이기적이고 반동적인 파리 고등법원의 대결 구도는 보수적인 20세기 초 제도사학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들은 모푸(Maupeou), 튀르고(Turgot)에 의해 추진된 개혁의 실패를 모두 파리 고등법원 탓으로 돌렸다.⁴⁾ 특히 1771년에 파리 고등법원을 폐지하려던 모푸의 시도는 올바른 것이었으며 프랑스의 불행은 바로 그 시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역사가들 사이에서 절대군주정에 대한 향수와 함께 모푸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전통해석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프랑스 제도사의 핵심 교재로 사용되는 무니에의 『프랑스 절대군주정의 제도』는 전통해석을 계승하고 있으며 루이 15세에 대한 방대한 전기를 쓴 앙투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⁵⁾ 보수적 역사가들의 정반대 편에 선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법관들을 이기적인 반동적 세력으로 간주하는 전통해석이 민중혁명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⁶⁾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역사가 셔넨은 가히 독보적이다. 1963년에 제출된 박사학위

4) M. Marion, "Parlement", *Dictionnaire des institutions de la France aux XVII^e et XVIII^e siècles*(Editions A. & J. Picard & C^{ie}, 1923), pp. 422-433; F. Piétri, *La Réforme de l'état au XVIII^e siècle*(1935).

5) R.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sous la monarchie absolue*(PUF, 1974), t. II, pp. 253-258; M. Antoine, *Louis XV*(Fayard, 1989), pp. 156-176.

6) 알베르 소부울, 『프랑스 대혁명사』, 최갑수 옮김(두레, 1982), 상권, 75-78쪽.

논문을 보완한 『파리 고등법원』⁷⁾은 그때까지 프랑스에서조차 시도된 적 없는 파리 고등법원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그는 루이 9세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 군주정의 역사를 파리 고등법원의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중세 프랑스의 왕은 왕국을 이동하며 측근의 조언과 자문에 의존해서 사법, 경제, 행정의 모든 측면을 직접 관장했다. 그러나 왕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재판의 절차와 분야가 복잡해지자 루이 9세는 고등법원을 설립했다. 고등법원(Parlement)의 명칭은 중요한 토론이나 대화(parler)를 위한 기구라는 의미에서 영국의 의회(Parliament)와 같다. 1302년 고등법원은 왕실 법정에서 독립해서 이전에 왕궁으로 사용되던 시테 섬의 성(오늘날의 Palais du Justice)에 자리 잡았다. 1345년 이후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면서 파리 고등법원은 법률 지식을 갖춘 자들이 왕을 대신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구로 자리매김되고 등기 절차가 시도되었다. 이때부터 모든 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관행이 시작되고 파리 고등법원은 왕실의 법적 기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초기에 등기는 간단한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법관들은 점차 새로운 법을 등기하기 전에 이전의 법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이 이전의 것과 모순되면 이의를 제기했다. 법을 검토하고 토론을 벌이며 수정을 가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서서히 고등법원의 위상이 바뀌었다. 고등법원은 점차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법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5세기 이후 고등법원의 등기권(droit d'enregistrement)과 등기를 거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간주권(droit de remontrances)은 프랑스사의 관습으로 정착했다.⁸⁾

서넛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전통해석을 논박했다. 파리 고등법원의 최대 관심사는 법의 수호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관들은 왕권강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던 군주정의 횡포에 맞서 기존의 법과 법률 절차를 고수하려고 애썼다. 서넛에 의하면 역사가들은 파리 고등법원의 이러한 법률 존중주의를 이기심으로 혼동한 것이다.⁹⁾ 나아가 그는 법관들의 고도의 의무감과 사회적, 법적 태도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파리 고등법원에 사뭇 우호적인 서넛의 연구에서 파리 고등법원은 반동적이고 이기적인 귀족 엘리

7) J. H. Shennan, *The Parlement of Paris*(Cornelle Univ. Press, 1968).

8) *Ibid.*, pp. 17-21.

9) *Ibid.*, p. 250.

트층의 대변인이 아니라 과거의 법을 수호하는 존경받을 만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전통해석에 대한 더 강도 높은 비판은 프랑스 역사가 에그레(Egret)에 의해 제기되었다. 『루이 15세와 고등법원의 저항』¹⁰⁾에서 그는 18세기 정치위기를 분석하며 파리 고등법원을 전제주의에 맞선 군주정의 수호자로 역설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파리 고등법원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역사가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말 파리 고등법원의 간주서를 출판한 플라메르몽이다.¹¹⁾ 그는 간주서의 제출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무참사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국무비서들에 의해 문서로 작성된 뒤 검찰총장을 통해 파리 고등법원에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된다. 새로운 법안의 10분의 9는 즉석에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등법원은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간주서를 작성해서 왕에게 제출한다. 왕은 이에 대해 등기명령서(lettre de jussion)를 보내 등기를 강요한다. 간주서 제출이 8번 허용된 만큼 이 과정은 8번이나 반복될 수 있다. 법관들이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들의 법적 특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간주서의 내용은 주로 백성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세금이나 종교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간주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군주권과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발전되었다. 플라메르몽은 이러한 간주서를 토대로 파리 고등법원을 군주정의 강압에 시달린 인민의 대표이며 헌법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에 가장 근접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파리 고등법원이야말로 인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이다.¹²⁾

에그레 역시 간주서를 증거 삼아 고등법원의 정치적 입장을 항변했다. 그르노블 고등법원 연구에서 출발한 그는 간주서를 꼼꼼히 분석하며 루이 15세의 대신들과 파리 고등법원의 갈등을 전통해석과는 정반대로 해석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본래 정치적 토론을 위한 무대가 아니었기에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기보다는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고 자체의 조직적인 권한과 위상을

10) J. Egret, *Louis XV et l'opposition parlementaire*(PUF, 1970).

11) J. Flammermont, *Les Remontrances du parlement de Paris au XVIII^e siècle*, 3 vols(1888-1898).

12) *Ibid.*, t. 1, p. 101(J. Egret, *Louis XV et l'opposition parlementaire*, p. 156에서 재인용).

옹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삼부회가 유명무실해진 1614-1789년에 파리 고등법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의 상소기구로서 정치적 토론의 광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이기적인 계급 집단에서 권위적인 군주정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국민의 수호자이자 여론의 대변인으로 승격되었다.

이렇듯 1960년대에 새로운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파리 고등법원 연구는 대립적인 양측의 해석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제도사가들이 정부의 공문서와 법령집에 의존해서 전통해석을 체계화했다면, 새로운 파리 고등법원 연구는 주로 법관들이 제출한 간주서 분석에 의존했다. 공문서와 법령집들이 군주와 대신의 정치 의지와 신념을 대변한 반면, 간주서는 법관들이 스스로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의견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통해석이 보수적 시각에서 군주정의 입장을 대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등법원 연구 역시 법관들의 자기 합리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데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간주서는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왕이 직접 파리 고등법원에 행차하는 친립법정(lit de justice)이 개최되면 법관들은 왕의 요구대로 법안을 등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주서는 프랑스 혁명기까지 공식적으로 왕의 입법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다. 파리 고등법원은 간주서를 통해 프랑스의 역사적 전통을 소급해가며 스스로의 역할과 위치를 항변하고 왕의 칙령과 참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간섭권을 주장했다. 파리 고등법원의 정치적 역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고 간주서는 항상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그러나 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는 파리 고등법원이 왜 군주권에 도전했는지 이해할 수 없듯이, 간주서의 분석만으로는 역사적 현실로서의 정치위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실제 역사적 상황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III.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관계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치세는 흔히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에서도 하나의 분기점으로 자리매김된다. 1673년 2월 24일 루이 14세는 국왕 포고령을 통해 파리 고등법원의 간주권을 1회로 제한했다. 이로써 루이 14세는 오랫동안 파

리 고등법원의 정치적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법관들을 사법권의 영역에 가두는 정치혁명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¹³⁾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루이 14세의 강경한 태도는 프롱드난의 악몽에서 기인한 것이다. 1648년에서 1653년까지 프랑스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은 프롱드난은 1648년 1월 파리 고등법원이 정부 측의 무리한 재정 요구 및 증세에 반발한 데서 촉발되었다. 여기에 파리 시민들이 동조하며 무력행사를 서슴지 않았고 다른 최고법원들과 대귀족들이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고무된 파리 고등법원은 ‘동맹선언문’을 공포하고 과세승인권과 인신보호율이 포함된 급진적 내용의 ‘27개조’ 결의안을 채택했다.¹⁴⁾ 파리 고등법원은 반란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며 1세기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귀족들의 뿌리 깊은 반란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다. 프롱드난의 진압 후 정부는 프롱드난 동안 파리 고등법원의 모든 기록의 삭제를 명령했다.¹⁵⁾ 또한 1665년 파리 고등법원을 포함한 최고법원(les cours souveraines)의 명칭을 상급법원(les cours supérieures)으로 바꾸어 주권 행사자로서의 개념을 박탈했다.¹⁶⁾ 간주권을 제한한 1673년의 국왕 포고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파리 고등법원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 등기권과 간주권 자체를 시비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파리 고등법원은 과연 루이 14세의 강압정책의 희생자였을까? 오늘날 루이 14세가 철저한 정치혁명을 단행하고 과거와 단절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역사가는 거의 없다.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루이 14세의 태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연구된다. 햄서는 이런 점에서 선구적이다.¹⁷⁾ 1976년에 발표된 『프롱드난 이후의 파리 고등법원』에서 그는 역사 현실은 대립과 억압의 논리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t. II, p. 608; 파리 고등법원의 통제에 성공한 루이 14세의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J. H. Hurt, *Louis XIV and the Parlements: The Assertion of Royal Authority*(Manchester, 2002) 참조.

14) 이영림, 「파리 고등법원의 프롱드난 연구」, 『이대사원』 제28집(1995), 448쪽.

15) 파손된 부분은 파리 고등법원에서 과격한 정치 논쟁이 담긴 *Registres du conseil secret du Parlement de Paris*이다. 이 부분은 복구되어 오늘날 Archives Nationales에 보관되어 있다(Seris U 28-30).

16) Marion, *Dictionnaire des institutions*, p. 522.

17) W. Beik, “The Absolutism of Louis XIV as Social Collaboration”, *Past & Present*, No. 218(August 2005), p. 218.

다.¹⁸⁾ 이를 위해 그는 이전의 역사가들과는 사뭇 다른 사료에 접근했다. 파리 고등법원의 간주서보다는 법관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상태, 가계도 등의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그는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정책의 내막을 파헤쳤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법관들의 상당수는 재정이 가문 출신이거나 재정이들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고 루이 14세의 치세 동안 그들은 대부와 세금 징수권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재정거래를 통해 더욱 부유해졌다. 또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법관들 중 일부는 각 지방의 지사로 파견되거나¹⁹⁾ 궁정에 출입하며 권력의 실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서, 국새상서, 대신직에 올랐다. 이들의 존재는 파리 고등법원이 루이 14세의 희생자라기보다는 협력자였음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법관들은 교회나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석권을 보장받고 도시 행정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이권행사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렇듯 루이 14세는 파리 고등법원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했으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법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베풀었다. 왕은 절대군주의 외양을 유지하는 대신 법관들은 부와 특권을 유지하는 타협안을 놓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1673년 루이 14세의 승리는 피상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루이 14세의 이중정책을 폭로한 햄셔의 연구는 절대군주정의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루이 14세의 군주정과 파리 고등법원 사이의 복잡한 인적 그물망, 둘 간의 거래와 권력의 실제 작동방식을 추적한 그의 연구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이후 루이 14세의 중앙집권화의 이면을 폭로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쏟아졌다. 특히 루이 14세 치세의 중앙정부와 지방 엘리트층 사이의 타협과 거래, 궁정 파벌에까지 연결된 귀족들의 후견조직망의 존재를 밝혀낸 영·미 학계의 연구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햄셔의 연구는 이렇듯 루이 14세의 성공신화를 깨뜨리는 단초 역할을 한 셈이다.²⁰⁾

18) A. N. Hamscher, *The Paris Parlement after the Fronde, 1653-1673*(Pittsburg, 1976).

19) 리슐리외와 마자랭 지배 시대에 지사로 파견된 총 128명 중 56명이 파리 고등법원 법관 출신이었다. R. Bonny, "La Fronde des officiers, mouvement réformiste ou rébellion corporatiste?", *XVII^e Siècle*, no. 145(1984), p 327.

20) 지방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타협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W. Beik, *Absolutism and Society in Seventeenth Century France: State Power and Provincial Aristocracy in Languedoc*(Cambridge Univ. Press, 1985); S. Kettering, *Patrons, Brokers,*

파리 고등법원의 연구사에서 햄셔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다. 물론 로베르 데시몽, 아를레트 주아나 등 프랑스 근대사가들은 파리 고등법원이 왕실의 정책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결국 왕실의 지지자로 남았음을 인정한다.²¹⁾ 그러나 둘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최근 3편의 연구는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관계가 그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복잡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왕, 하나의 믿음. 파리 고등법원과 16세기 종교내전』, 『파리 고등법원과 앙리 4세의 관계』, 『파리 고등법원 혹은 이성의 목소리, 1559-1589』²²⁾는 16세기 후반 군주권과 번번이 충돌한 파리 고등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세 편의 연구 모두 갈등과 대립으로 인식되어온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관계를 타협과 협력의 시각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햄셔의 논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시각은 그의 것과 다르다.

우선 『파리 고등법원과 앙리 4세의 관계』는 법관들이 남긴 편지나 회고록에서 드러난 그들의 집단 심리와 자기 정체성을 통해 고등법원과 군주의 관계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앙쉴 드 아를레(Anchille de Harlay)의 편지는 스스로를 전문법률가 집단으로 여기던 법관들이 정치적, 종교적 위기를 겪으며 왕국의 수호자로서의 정치적 자부심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위그노인 앙리 4세가 왕이 되자 파리 시민들과 함께 파리의 성문을 닫아걸고 왕을 거부했던 파리 고등법원이 그의 개종 후 '왕들의 그림자'(l'ombre des rois)를 자처하며 군주정의 파트너 역할을 한 것을 그러한 의식의 변화로 설명했다. 앙리 4세로서는 군사적 성공과 개인적 통치력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통일과 평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리 고등법원의 전통적인 권위와 법적 관행의 도움이 필요했다. 1598년의 낭트 칙령은 그러한 앙

and Clients in Seventeenth Century France(Oxford Univ. Press, 1986); R. Mettam, *Power and Faction in Louis XIV's France*(Oxford Univ. Press, 1988).

21) A Jouanna, *Le Devoir de Révolte, La Noblesse française et la gestion de l'Etat moderne, 1559-1661*(Fayard, 1989); N. Bulst, R. Descimon et A. Guerreau, *L'Etat ou le roi. Les Fondations de la modernité monarchique en France (XIV^e-XVII^e siècles)*(Ed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96).

22) N. L. Roelker, *One King, One Faith. The Parlement of Paris and the Religious Reforms of the Sixteenth Century*(Univ. of California Press, 1995); M. de Waele, *Les Relations entre le Parlement de Paris et Henri IV*(Publisud, 2000); S. Daubresse, *Le Parlement de Paris ou la voix de la raison, 1559-1589*(Genève: Droz, 2005).

리 4세의 결단과 호소를 통해 탄생한 타협의 산물이다. 파리 고등법원으로서도 정치적 분열의 위기에서 부르봉 왕조를 구출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종교내전 당시 발루아 왕조와 파리 고등법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서 있다. 특히 에콜 데 샤프트 출신의 고문서 전문가인 도브레스는 『파리 고등법원 혹은 이성의 목소리, 1559-1589』에서 방대한 사료에 대한 엄격한 고증작업을 통해 기존의 해석²³⁾을 반박했다. 우선 그녀는 왕실과 파리 고등법원의 공식문서들과 법원에서의 논의 내용을 연대기별로 정리하고 목록을 제시했다. 에그레가 간주서의 내용 분석에 치중했다면, 도브레스는 간주서의 제출 배경과 내용뿐 아니라 왕실의 답변과 논의 과정을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내전 동안 파리 고등법원은 종교와 재정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왕실과 충돌했다. 예를 들어 개신교도의 권리를 회복시켜준 앙부아즈 칙령(1563년)을 불만스럽게 여긴 파리 고등법원은 재정에 관한 왕실의 등기요구를 거절했다. 이때부터 파리 고등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리 고등법원은 당시 유행한 계약이론을 토대로 카롤링거 의회의 직접 후계자이자 왕과 계약을 맺은 인민의 수호자로 자처했다. 이러한 주장은 훗날 정치위기 때마다 정치논쟁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할 것이었다. 프롱드난 동안 파리 고등법원이 제시한 ‘27개조’ 결의안도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고등법원의 정치적 권리도 바로 그러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내전 동안 왕실과 파리 고등법원은 빈번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결과는 둘 간의 타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저자는 오랫동안 둘 간의 다툼의 불씨로 여겨져 온 간주서가 협상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시기에는 간주서가 비밀에 부쳐졌다는 사실이다. 프롱드난 당시에, 그리고 18세기의 정치위기 때마다 간주서가 출판되고 널리 보급된 것과는 달리, 종교내전 동안 간주서는 비밀에 부쳐졌고 그럼으로써 왕실과 파리 고등법원 사이를 오가며 미묘한 정치 타협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16세기와 17·18세기 정치문화의 차이는 글의 생산과 보급의 물질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저자는 이를 무엇보다도 파리 고등법원의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했다. 종교내전 동안 간주서는 여론 선동용 팸플릿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기에 왕실을 안정의 주체로 인식한 파리 고등법원의 ‘이성의 목소리’였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파리 고등법원이 왕실과 갈등을 벌인 것도 근본적으로는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영국 의회가 국교화를 둘러싼 종교논쟁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듯이, 파리 고등법원 역시 8차례에 걸친 종교내전 동안 칙령의 등기를 놓고 왕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책 입안과 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서서히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은 태생적으로 영국의 의회와는 다르며 프랑스 군주정은 영국식 혼합정부와는 거리가 멀다. 도브레스가 보여준 프랑스 군주정은 봉건적 속성을 지닌 중세의 군주정에 가깝다. 왕이 파리 고등법원에 행차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친림법정은 그러한 중세적 전통이 유지된 대표적인 예이다. 그것은 파리 고등법원의 탄생 이전으로의 복귀를 상징한다.

친림법정은 모든 법관들의 전체 집회가 열리던 대법정(grand chambre)에서 개최되었다. 한편에는 법관들과 고위 귀족인 중신들이 앉는 긴 의자가 놓여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좌석이 있다. 방 한 가운데 위치한 상단 위에는 단집이 달린 옥좌가 놓여 있다. 벽은 백합꽃 문양이 새겨진 푸른색 벨벳 양탄자들로 덮여 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방의 뒷면 벽을 장식한 예수 수난상이다. 화려한 고딕 양식의 대법정은 루이 12세가 이탈리아 건축가를 초빙해서 건축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엄숙하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절대군주정의 정치 문화를 연구한 핸리는 대법정의 이러한 공간적 의미와 실내장식의 정치적, 종교적 상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군주권과 파리 고등법원의 관계를 해석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친림법정은 사법권의 근원인 왕이 중신들과 함께 재판하던 전통적인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왕의 의지를 강요하는 교묘한 연극 장치이다. 다시 말해 친림법정은 파리 고등법원이 군주권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으며 군주권을 대변하는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확인시키고 주입시키는 자리다. 실제로 절대군주정의 역사에서 친림법정은 종종 파리 고등법원을 복종시키기 위한 정치무대로 활용되었다.²⁴⁾

23) 종교내전 동안 왕실과 파리 고등법원의 갈등관계를 강조한 연구로는 J. L. Bourgeon, *Charles IX devant la Saint-Barthélemy*(Genève: Droz, 1995) 참조.

24) S. Hanley, *The lit de Justice of the Kings of France: Constitutional Ideology in*

그러나 미성년 왕이 즉위한 1610년, 1643년, 1715년에 거행된 세 차례의 친립법정은 그와는 다른 의도에서 연출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앙리 4세의 암살 직후 거행된 1610년의 친립법정이다. 왕이 죽은 지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인 5월 15일, 8세에 불과한 신왕 루이 13세는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파리 고등법원에 행차했다. 이는 선왕의 승하 40일 후에 치러지는 장례식 이후에야 신왕이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선왕의 유언을 파기하고 모후인 마리 드 메디시스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국왕 포고령을 내렸다. 그 대가로 파리 고등법원은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왕의 암살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전에 섭정과 파리 고등법원 사이에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담합은 1643년 5월 루이 14세 의해 재현됨으로써 프랑스 군주정의 전통이 되었다. 1715년에 다시 한 번 재현될 친립법정을 통해 파리 고등법원은 간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꾀할 것이었다.

IV. 법관들의 지위와 삶

이렇듯 오랜 전통과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집단 심성과 엘리트 의식을 토대로 파리 고등법원은 집단적 응집력을 발휘하며 정치적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법관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 계보 등을 세밀히 분석한 블뤼슈의 연구에 의하면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인은 공동의 이해관계이다.²⁵⁾

사실상 파리 고등법원의 구성원인 법관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들이 매직관리였으며 관직이 세습되었다는 점이다. 관직매매는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유럽에 만연한 현상이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상비군 유지와 국가 기구의 확대의 필요성에 직면한 프랑스에서 유난히 성행했을 뿐이다. 15세기에 재무관직에서 시작된 관직매매는 곧 관직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 중에서도 파리 고등법원 법관직은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파리에서는 1559년에 판사직이 1만-1만2천 리브르, 앙리 4세 치세 말기에는 4만2천-4만5천 리브르였고, 루이 13세 시대에는 7만, 루이 14세 초

Legend, Ritual, and Discourse(Princeton Univ. Press, 1983).

25) F. Bluche, *Les Magistrats du parlement de Paris au XVIII^e siècle*(Economica, 1986).

기에는 14만 리브르였다. 특히 1615년과 1640년 사이에 밀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지만 관직 가격은 두 배로 치솟았다.²⁶⁾ 게다가 관직의 세습을 공식화한 1604년의 폴레트법(일명 관직세법)으로 법관들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다. 매년 관직 가격의 60분의 1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직의 세습을 허용한 폴레트법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왕실에 이로우지만 결과적으로는 파리 고등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법관들은 기능과 역할에서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왕에게서 독립된 존재였다.

법관들의 지위는 귀족이 됨으로써 더욱 확실해졌다. 법관직을 구입한 계층은 대부분 현금 동원력을 지닌 부르주아층이었고 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족 대열에 합류했다. 왕으로부터 귀족 증서를 부여받거나 봉토 구입을 통해 귀족이 되기도 했지만 17세기 초 고위 관직의 경우 관직 구입 후 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귀족이 되는 관행이 정착했다. 이후 파리 고등법원의 귀족화 현상은 빠르게 진전되어 파리 고등법원은 문자 그대로 법복귀족의 아성이 되었다. 1685-1690년 출신이 확인된 164명 중 파리 고등법원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귀족이 아닌 법관은 단지 8명(4.8%)에 불과했다.²⁷⁾ 1715년이 되면 파리 고등법원 법관 전체의 81.5%가 귀족이었다.²⁸⁾

블뤼슈의 방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는 18세기 법관들의 구체적인 삶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²⁹⁾ 법관들은 부를 토대로 관직을 보유하는 동시에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전통적인 대검귀족처럼 타유세를 면제받고 부역의 의무에서 해방되었으며 군 숙박의 의무에서도 벗어났다. 법관직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이미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만큼 그들은 대부분 부유했다. 수백만 리브르를 지닌 자산가들도 적지 않았다. 평균 연 수입은 평균 15,000리브르에 달했고 25,000리브르를 넘는 법관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gages)와 그 액수의 3배 정도인 소송사례비(epice)를 합쳐도 연 1,000리브르 정도였는데 이는 관직 구입액의 2.7% 정도로 당시의 이율 5%에 훨씬 못 미쳤다. 여기서 법관들의 수입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26) 이성재, 「구체제 시기 고등법원의 구성과 역할」, 93쪽.

27)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t. II, p. 319.

28) L. Bouquin, *La Noblesse dans la France moderne XVI^e-XVIII^e siècles*(Belin, 2002), p. 44.

29) Bluche, *Les Magistrats du parlement*, pp. 101-184.

블뤼슈에 의하면 법관들은 임대소득을 얻거나 일부 왕으로부터 연금을 부여받기도 했지만 주 수입원은 영지였다. 그들은 파리에서 가까운 일드프랑스와 보스 지방의 영지를 소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영지를 운영하는 영주였다. 영주이자 경제적 여유를 지닌 법관들은 전통귀족처럼 귀족생활을 즐겼다. 그들은 파리 시내, 주로 시테와 마레 지구의 저택에 살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며 제복을 입은 하인들을 거느렸다. 여름에는 영지에 있는 우아한 성에서 영주생활을 즐겼다. 한마디로 물질적 조건과 문화적 범주에서 볼 때 법관들은 귀족계급의 중요한 일원에 속했다. 부와 사회적 지위에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그들은 지방귀족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었지만 궁정귀족보다는 약간 낮은 지위로 인식되었다.

자연히 파리 고등법원 법관직은 모든 관리들과 부르주아층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급박한 재정 수요에 직면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16세기 이후 법관 수는 꾸준히 늘었다. 프랑수아 1세 치세에 100명을 넘어선 법관들은 1598년에 약 150명이 되었다. 이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1685년 28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루이 14세 치세 말기를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해서 1730년에 257명이 되었다. 이에 비해 브르타뉴 고등법원의 법관 수는 1724년에 94명, 보르도는 1774년에 153명, 부르고뉴는 72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파리 고등법원 법관 수가 지방 고등법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³⁰⁾

이렇듯 파리 고등법원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법관직이 귀족이 되기 위한 관문이어서도 수익성이 높아서도 아니었다. 관직이 세습재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던 만큼 법관들은 관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배되었다. 가문의 전통이 무서운 흡입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1715-1771년의 법관 951명은 590개의 가문 출신이며 그 중 212개의 가문이 2명 이상의 법관을 배출했다.³¹⁾ 당시 대표적인 법복귀족 가문인 라무아농(Lamoignon)과 르펠티에(Le Peletier) 가문에서는 이 시기 동안 각각 10명과 8명의 법관이 탄생했다. 그 외에도 탈롱(Talon), 몰레(Molé), 에노(Hénault) 가문도 다수의 법관들을 배출하며 법복귀족 가문으로서의 명성을 누렸다. 이들은 광범위한 혈족관계와 결혼에 의한 친족관계를 토대로 복잡하게 얽힌 인

30) P. R. Campbell, *Power and Politics in Old Regime France, 1720-1745*(London: Routledge, 1996), pp. 302-303.

31) Bluche, *Les Magistrats du parlement*, pp. 121-130.

적 그물망을 구축했다.³²⁾ 이를 발판으로 삼아 그들은 법원 내 고위직을 독차지하고 정부 고위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위 의식뿐 아니라 출세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혔다. 법관들 중 3분의 1은 법원 밖으로 진출했다. 일부는 지방 고등법원의 법원장이 되거나 지사로 활약했다. 특히 대상서와 국세상서는 전통적으로 파리 고등법원 수석 법원장의 승진코스였다. 세기에(Séguier)와 다게소(d'Aguesseau), 라무아농, 모푸가 대표적인 예이다. 군주권의 오른팔인 경찰총감과 청원심사관도 대부분 파리 고등법원 법관들로 채워졌고 드물지만 푸케(Fouquet), 다르장송(d'Argenson), 튀르고처럼 대신직에 오른 경우도 있다. 파리 고등법원 법관직은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파리 고등법원에서 일생을 지냈다. 16세기 말 이후 1756년까지 파리 고등법원은 5개의 심리법정(chambre des Enquêtes)과 2개의 재심법정(chambre des Requetes), 그리고 대법정(Grand chambre)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왕실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상소 사건들에 대한 논의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대법정이 핵심기구였다. 심리법정은 대법정이 다룬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고 재심법정은 탄원서와 상소장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대법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법관들은 누구나 대법정에 속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대법정에 진출하는 법관들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법관들의 5분의 2는 평생 같은 법정에 머물렀다. 그나마 새로운 법복귀족 가문은 그럴 가능성이 없었으며 오랜 가문 출신만이 그런 행운을 누렸다.

한 마디로 법관들은 동일한 견해를 지닌 동족 집단이 아니었다. 블뤼슈의 연구에 의해 드러난 법관들의 계보와 파벌의 존재를 보면 파리 고등법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법관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복잡적이었다. 노인과 젊은 세대의 괴리, 경험과 미숙함의 차이, 집단적 유대감과 파벌들 사이의 충돌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관들의 집단별 차이가 전체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가장 분명한 사실은 파리 고등법원의 수장인 수석 법원장과 그의 측근이 파리 고등법원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수석 법원장은

32) 법관들의 사회적 그물망에 관해서는 *ibid.*, pp. 233-294 참조.

수세대에 걸친 가문의 공력을 쌓은 자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 수석 법원장은 매관직이 아니었고 세습직도 아닌 국왕 임명직이었다. 왕은 3-4명의 고참 중신 재판장들 중에서 수석 법원장을 임명했다. 수석 법원장은 궁정과 파리 고등법원의 연결고리로서 법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왕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있었다. 이렇듯 미묘하고 까다로운 위치는 여러 면에서 수석 법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그는 왕과 대신들을 직접 대면하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연금의 분배에 개입하며 법관들을 관리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역으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파벌을 동원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었다. 특히 간주서의 작성에서 수석 법원장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³³⁾

결국 파리 고등법원은 사실상 소수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의 등기를 놓고 전체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참석 법관의 수는 대체로 5분의 4를 넘지 않았다. 실제로 법관들의 결석은 일상적인 현상이었고 표결에 영향을 미친 법관들의 발언은 거의 고참이나 열성과 법관 7-8명의 전유물이었다. 블뤼슈의 연구에 의하면 법관들의 업무량도 천차만별이었다. 1715-48년에 제5심리법정의 법관 70명 중 50% 이상이 일 년에 5건 혹은 그 미만의 사건을 맡았고, 16명이 6-9건, 7명이 10-19건, 나머지 12명이 20-80건을 맡았다. 대부분의 법관들의 나태함을 드러내는 이 통계수치는 법관들의 실제 삶이 그들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차 조국에 대한 열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역설하는 법관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해서 형성된 것일까? 왕실에 제출한 간주서에서 파리 고등법원은 흔히 스스로를 로마 원로원에 비유했다. 회고록과 편지에서 법관들은 고대의 카토와 키케로를 전범으로 여기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법관들이 만들어낸 더욱 구체적인 자기 이미지는 매년 11월 11일 생마르탱의 날에 개최된 개회식에서 검찰차장이 행한 훈계이다. 명예로운 지위에 만족하고 절약, 엄격함, 도덕심을 지키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훈계는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그러나 당초가 『루이 14세 시대의 비망록』에서 법관사회에 무지와 부패가 만연하다고 개탄했듯이, 젊은 법관들 중 상당수는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법관 자격은 법학사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25세 이상, 수석 재판장은 40세

33) *Ibid.*, pp. 160-174.

이상이어야 했지만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17세기 이후 대학이 쇠퇴하면서 대학 과정의 수준이 낮아지고 법관들의 법률적 지식은 초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자연히 법관 교육은 주로 실무 경험에 의존하게 되었다.³⁴⁾

18세기에 법관들은 더 이상 법관으로서의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책임감을 귀족으로서의 우월감과 조화시키는 데 만족하던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상층귀족 집단에 속하게 된 그들은 궁정귀족에 근접해가며 귀족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법복귀족과 대검귀족의 혼합현상을 연구한 포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루이 14세 시대를 거치며 확인해졌다. 법복귀족으로서 최고의 부와 지위를 누리던 파리 고등법원 법관과 대검귀족 가문들 사이의 정략결혼은 17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꾸준히 전개되어왔으나 루이 14세 시대에 급속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³⁵⁾ 이는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한 루이 14세의 이중정책의 영향인 듯하지만 가정에 불과할 뿐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혼합의 결과 18세기 초에 이르면 법관들의 4분의 1이 대검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군장교직에 진출한 형제를 두었으며 8분의 1이 궁정귀족과 인척관계를 맺었다.³⁶⁾

그와 더불어 문화적 혼합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8세기에 파리에서 법관들은 대부분 궁정귀족의 자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루이르그랑 콜레주에 다니며 취향과 습관을 공유했다. 이런 경향은 루이 14세의 사망 후 베르사유 대신 파리가 문화적 수도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함께 살롱에 드나들며 궁정 소식을 주고받고 정치에 대해 논의했다. 18세기 중엽이 되면 법복귀족과 대검귀족의 오랜 경쟁과 싸움은 잊혀진 과거의 일이 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사회적 균형상태를 동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³⁷⁾ 점차 혈통에 기반한 낡은 귀족 이론은 폐기되

34) Campbell, *Power and Politics*, pp. 228-231.

35) 법복귀족과 대검귀족의 혼합현상에 관한 연구로는 F. L. Ford, *Robe and Sword The regrouping of the French aristocracy after Louis XIV*(Harvard Univ. Press, 1953) 참조. 18세기 귀족을 연구한 쇼시당노가레의 시각 역시 기본적으로 포드와 동일하다: G. Chaussinand-Nogaret, *La Noblesse au XVIII^e siècle. De la féodalité aux lumières*(Hachette, 1976).

36) Bluche, *Les Magistrats du parlement*, pp. 232-233.

37) 물론 포드의 해석과는 달리 루이 16세 시대에도 대검귀족과 법복귀족 사이의 갈등이

고 관직, 특히 법관직이 귀족의 상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파리 고등법원의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은 법관으로서의 집단적 이익을 옹호하던 차원에서 전체 귀족의 특권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법관들이 처한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겉으로 드러난 위세나 주장과는 달리 파리 고등법원은 18세기에 계속해서 위축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법관 수의 감소이다. 1730년 257명이던 법관 수는 1750년 248명, 1759년 179명, 1769년 169명으로 줄어들더니 1789년에는 148명에 불과했다. 법정 수도 줄어들었다. 1756년 심리법정이 5개에서 3개로, 재심법정도 2개 중 하나가 폐지되었다. 블뤼슈는 관직 수의 감소 원인을 관직 가격의 하락에서 찾았다.³⁸⁾ 1714년 10만 리브르에 달하던 법관직이 1725년 6만 리브르, 1740년 4만 리브르, 1751년에는 34,000리브르로 떨어졌다.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저마다 다르게 설명했다. 셔넌은 관직 가격의 하락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간주했다.³⁹⁾ 앙투안에 의하면 파리 고등법원의 사회적 명성과 권위가 하락한 반면 고위 행정직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⁴⁰⁾ 법관 수의 감소와 관직 가격의 하락은 18세기의 전체적인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설명될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17세기에 자행된 무분별한 관직매매의 후유증을 부정할 수 없다.⁴¹⁾ 문제는 관직 수 감소와 관직 가격의 하락이 한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하고 비대해진 군주정과 파리 고등법원 모두의 기반을 허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둘 간의 공생관계는 깨지고 서로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며 서로를 잡아먹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그럴수록 파리 고등법원의 사명감과 전투의지는 강해졌다.

유지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B. Stone, "Robe against Sword: the Parlement of Paris and the French Aristocracy, 1774-1789", *French Historical Studies*, No. 9(1975), pp. 278-303.

38) Bluche, *Les Magistrats du parlement*, pp. 115-123.

39) Shennan, *The Parlement of Paris*, pp. 143-145.

40) Antoine, *Louis XV*, pp. 568-570.

41) Bluche, *Les Magistrats du parlement*, pp. 115-123.

V. 18세기의 정치적 갈등: 이데올로기 논쟁과 권력다툼

파리 고등법원의 대반격이 시작된 출발점은 1715년이다. 루이 14세가 사망한 다음 날인 1715년 9월 2일, 루이 15세의 섭정이 된 오를레앙 공작이 파리 고등법원으로 행차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서둘러 섭정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한 선왕의 유언장을 파기하고 전권을 인정받았다. 이 모두가 파리 고등법원과 섭정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루이 14세의 유언장을 파기해 주는 대가로 파리 고등법원은 간주권을 회복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제 과거의 정치적 권한을 되찾고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다.

루이 14세가 남긴 치명적인 유산인 안센주의 문제가 그 시험대 역할을 했다. 1713년 로마 교황청이 루이 14세의 요청으로 안센주의를 단죄하는 유니게니투스 대칙서를 공포했는데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 교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칙서의 등기를 지연시켜왔던 것이다.⁴²⁾ 종교적 회의론자인 섭정은 파리 고등법원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의 태도는 완강했다. 섭정 역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등기명령서와 친림법정이라는 낡은 수단을 동원해서 파리 고등법원을 견제했다. 이렇게 해서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오랜 싸움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에 일관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강압과 타협 사이를 오가며 갈팡질팡했다. 1730년 3월 24일, 마침내 대칙서를 국가의 법으로 인정하는 국왕포고령이 공포되자 파리 고등법원은 정부와 첫 번째 정면대결을 벌였다. 이후 재판 중단, 파업, 추방, 굴복 등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둘 간의 싸움은 1753년 군주정의 권위 자체를 문제 삼는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7년전쟁과 아메리카 독립전쟁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증폭되자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해석에 의하면 18세기 프랑스 정치위기의 주범은 파리 고등법원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가 권력의 성장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한 파리 고등법원이 군주권에 반발했으며 그러한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자기 보호본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루이 14세에 대한 기존

42) 안센주의에 관해서는 이영림, 「프랑스의 안센주의: 신학에서 정치로」, 『서양사론』 67호(2000), 155-179쪽.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다. 루이 14세에 의해 움짱달썩하지 못하던 고등법원이 그의 사망 후 마치 고삐에서 풀려난 듯이 과거의 권한 회복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루이 14세의 성공신화와 맞물린 파리 고등법원의 전통해석은 프랑스 혁명을 직접적 진보의 과정으로 설명한 전통적인 혁명사관과 맥을 함께 하며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18세기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의 성격과 의미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수정주의 해석과 더불어서이다. 혁명의 단절성보다는 지속성에 주목하는 수정주의 역사가 푸레와 베이커는 혁명적 행위로 구현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기원을 앙시앵 레짐 하의 정치문화에서 찾았다.⁴³⁾ 특히 베이커는 1750년대에 출판된 파리 고등법원의 간주서에서 사용된 언어와 그 언어가 여론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다. 간주서의 출판은 불법이었지만 파리 고등법원에 고용된 인쇄업자들에 의해 간주서가 비밀리에 출판되고 보급되었다. 이런 점에서 루이 15세의 시대는 정치적 논의 자체가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루이 14세의 시대와 사뭇 달랐다. 더구나 18세기의 경제 번영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뀌면서 식자층의 수가 이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문학과 철학, 심지어 정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널리 유통된 간주서는 정치영역 밖의 사람들을 정치논쟁으로 끌어들었다. 값싸고 쉽게 읽힐 수 있는 팸플릿과 다양한 매체들도 동원되었다. 그것은 여론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정부 역시 이에 맞서기 위해 출판물을 동원해서 파리 고등법원을 공격했다. 그럴수록 양측의 담론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치달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왕과 파리 고등법원의 싸움은 출판물 전쟁이자 여론 장악 싸움이다. 전통 해석에서 반동적인 파리 고등법원 대 개혁적인 정부의 싸움으로 설명된 18세기 정치위기가 정치문화사 연구에서는 경쟁적인 두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간주되었다.⁴⁴⁾

정부와 파리 고등법원이 벌인 이데올로기 싸움의 핵심은 헌정주의였다. 1753년 대간주서에서 파리 고등법원은 스스로 기본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지방 고등법원의 저항을 촉구했다. 헌법에 대한 합의는커녕 그 개념조차 불분명하

43) K. M. Beker, C. Lucas and F. Furet,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Creation of Modern Political Culture*, 3 Vols(London: Pergamon Press, 1987-1989).

44) K. M. Baker, "French Political Thought at the Accession of Louis XVI",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50(1978), pp. 279-303.

던 당시에 헌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베일에 감싸여 있던 국가의 신비를 폭로하고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논쟁은 정치적 혼란기마다 되풀이되어온 프랑스 고유의 정치적 전통에 불과하다. 문제는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이 공론화되고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1753-1754년에 출판된 르페주(Le Paige)의 『역사적 편지들』⁴⁵⁾은 파리 고등법원을 국민의 대표로 승격시키며 헌법논쟁을 본격화시켰다. 이른바 군주정의 원리 그 자체를 공개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전통해석은 파리 고등법원의 헌정주의를 이기심을 감추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수정주의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들은 헌법논쟁의 진정성과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근원에 주목했다. 일찍이 모르네는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에서 법관들이 18세기의 새로운 지적 조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관들이 철학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명하고, 또 그들의 저항이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간주서가 철학자들의 언어, 특히 『법의 정신』의 정치개념을 수용했다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역사가들은 계몽사상과 법관들의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18세기 정치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안센주의의 종교개념이 부각되었다. 1970년대 이후 종교사회학의 분야에서 혁명 이전부터 완만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온 탈기독교화의 원인으로 연구되어온 안센주의 문제를 정치사 연구로 확대시킨 대표적인 역사가는 반클레이이다. 1996년에 발표된 『프랑스 혁명의 종교적 기원』은 오랫동안 예수회 추방과 다미앵 사건 등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천착해온 그의 연구의 완결편이다.⁴⁷⁾ 칼뱅의 종교개혁에서 프랑스 혁명을 관통하는 장기지속적 시각에서 17세기 안센주의의 탄생과 18세기 정치화 과정을 추적한 이 책은 안센주의가 프랑스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45) Louis Adrien Le Paige, *Lettres historiques sur les fonctions essentielles du Parlement, Sur le droit des pairs, et sur les loix fondamentales du royaume* (Nabu Press, 2010).

46) 다니엘 모르네,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주명철 옮김(민음사, 1993), 434-435쪽.

47) D. Van Kley, *The Jansenists and the Expulsion of the Jesuits from France, 1757-1765*(Yale Univ. Press, 1975); *The Damiens Affair and the Unraveling of the Ancien Regime, 1750-1770*(Princeton Univ. Press, 1984); *The Religious Origins of the French Revolution*(Yale Univ. Press, 1996).

분석했다. 안센주의는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의 동력으로 간주되었다. 그 접점은 유니게니투스 대칙서로 파문의 위협에 직면한 안센주의자들이 파리 고등법원의 지지를 촉구하는 한편 공의회 소집을 요구한 1717년이다. 1718년부터 공의회소집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안센주의를 옹호하는 출판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치열하게 전개된 종교논쟁은 점차 정치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교황의 최고권에 맞선 안센주의자들이 요구한 영적 개인주의와 공의회 논의가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군주권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르페주는 『역사적 편지들』에서 바로 이 영적 개인주의와 공의회론을 정치적 입헌주의와 대의정치론으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불분명하고 모호한 역사적 전통에 기대어 군주권과의 정치적 다툼과 타협을 반복해온 파리 고등법원은 군주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철학자들보다 안센주의자들의 종교논쟁이 왕의 탈신성화와 헌정주의 이론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에 동의한다.⁴⁸⁾ 그러나 이데올로기 분석만으로는 18세기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과격하고 선동적인 담론은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정치사가들은 이러한 담론들을 1730-1732년, 1753년과 1756년, 1771년의 실제 역사적 사건과 결합시키고 담론의 탄생과정을 치밀하게 재구성한다. 캠벨과 스윈은 법관들의 파벌과 경력에 관한 블뤼슈의 사회학적 연구를 토대로 파리 고등법원에서의 논의와 간주서 작성과정을 법관들과 안센주의자들, 그리고 법관들과 대신들의 인간관계망 속에서 재구성했다.

우선 캠벨의 연구 대상은 파리 고등법원이 최초로 국왕의 자의적인 입법권을 공격한 1730-1732년의 정치상황이다.⁴⁹⁾ 당시 파리 고등법원과 정부의 갈등은 아직 헌정적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캠벨은 간주서에 새로운 정치 개념이 침투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했다. 200여 명의 법관들 중 안센주의파는 15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종교적 반대파는 다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헌주의 이데올로기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수사적 전략이었다. 여기에서 캠벨은 르페주와 몰트로 같은 법원 밖 투사의 정체와 역할을 강조했다. 안센주의파 법관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변호사인 그들은 1720년대에 신학을 공부하며 안센주의를

48) J. W. Merrick, *The Desacralization of the French Monarchy in the Eighteenth Century*(Louisiana State Univ. Press, 1990), pp. 19, 165-169.

49) Campbell, *Power and Politics*.

옹호하는 글로 정치경력을 시작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면 1730년대 정치적 갈등의 주역인 파리 고등법원은 소수의 안센주의 법관들에 의해 조종된 셈이며 입헌주의는 파벌의 움직임과 당파성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에 다름 아니다.

1750년대의 정치위기를 분석한 스윈의 시각도 그와 유사하다.⁵⁰⁾ 그녀는 1753년 대간주서 작성의 담당자들은 안센주의파 법관들이었으며 변호사들과 교회법학자들이 초안 작성 과정에서 참여했음을 밝혀내었다. 나아가 1756년 7년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정치논쟁의 쟁점이 종교문제에서 재정문제로 옮겨가는 과정에 작용한 안센주의파 법관들과 대신들 사이의 알력과 경쟁관계를 세밀하게 추적했다.

이처럼 특정한 사건에 초점을 맞춘 정치사 연구를 통해 18세기에 반복된 정치위기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관계망과 정치적 역학구조가 드러났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력을 지니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처신하지도 못한 법관들과 정치의 실체도 드러났다. 18세기에 정치란 경력과 가문, 명예,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와 영향력을 갖추고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 법관들은 다양한 인맥과 경력을 통해 파벌을 형성하고 사법권 수호를 외치며 대신들과 싸우고 타협했던 것이다. 대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궁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신들의 파벌은 친인척으로 가득 찬 후견조직망을 통해 다른 파벌과 경쟁을 벌이고 법관들의 파벌을 이용해서 파리 고등법원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렇듯 사적 관계로 서로 복잡하게 엮인 정치구조에서는 한쪽 진영에서 진술하면 대화보다는 반박으로 이어졌고 일단 갈등이 표면화되면 원래의 지점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웠다. 사안이 종교문제에서 재정문제로 확대되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구조는 혁명기까지 유지되었다.

정치사가들이 강조하는 바는 18세기 프랑스 군주정의 구조적 모순과 허약성이다. 전통해석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18세기 정치위기를 개혁적인 정부와 이기적인 파리 고등법원의 대결구도로 파악하기보다는 앙시앵 레짐 고유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치사가 도일에 의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근대적인 행정관료조직을 갖추지

50) J. Swann, *Politics and the Parlement of Paris under Louis XV, 1754-1774* (Cambridge Univ. Press, 1995).

못한 채 인신적 관계에 기반한 복잡한 파벌과 후견조직망에 의해 움직여졌다는 데 있다. 이는 루이 14세 시대의 정치적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루이 15세 시대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루이 14세의 사망 후 파벌간의 정치적 암투를 조정할 만한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경쟁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신들은 자신의 파벌의 이해관계를 지키며 다른 파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데 급급했다. 캄벨은 이러한 대신들의 불합리하고 경직된 태도가 군주권과 파리 고등법원의 타협의 전통을 깨고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았고 도일은 18세기 정치위기 자체를 대신들 사이의 파벌 경쟁의 결과로 간주했다. 나아가 그는 1771년 파리 고등법원의 해체를 시도한 모푸의 개혁 역시 경쟁자인 슈아쉴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⁵¹⁾

개혁적인 정치가로 알려져 온 모푸를 야심에 가득찬 기회주의자로 비난한 도일의 해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푸의 시도를 계기로 18세기 정치위기가 절정에 달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주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파리 고등법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애국파가 형성되고 광범위한 저항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모푸는 500년간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파리 고등법원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군주정의 존재 기반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도일이 모푸의 시도를 군주정의 일탈로 간주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⁵²⁾

1774년 루이 15세의 사망으로 모푸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다. 부활한 파리 고등법원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되고 사사건건 정부를 제압하려 들었다. 이후 정부의 시도는 좌절과 실패를 되풀이하고 파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개혁마저 파리 고등법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은 이미 정치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정치적 변화의 열망에 사로잡힌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점차 대의기구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삼부회 소집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파리 고등법원도 그 열망을 거스를 수 없었다. 1788년 7월 마침내 삼부회 소집이 결정되고 군주권과 파리 고등법원의 오랜 줄다리기는 파리 고등법원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은 삼부회 구성과 표결방식에서 1614년의 관행 준수를 고집함

51) W. Doyle, "The Parlements of France and the Breakdown of the Old Regime. 1771-1788", *French Historical Studies*, No. 6(1970), pp. 416-458.

52) W. Doyle, "The Parlements", K. Baker (ed.), *The Political Culture of Old Regime* (London: Pergamon Press, 1987), pp. 157-168.

으로써 신분별 질서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을 드러내었다. 이렇듯 파리 고등법원이 국민의 대표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정치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확대되고 삼부회 소집은 혁명으로의 길을 열었다.

VI. 맺음말

앙시앵 레짐이라는 단어는 혁명의 산물이다. 혁명의 필연성과 단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의 체제를 몽땅그린 이 신조어의 탄생 순간 파리 고등법원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수순에 따라 파리 고등법원은 1790년에 사망했다. 이후 혁명의 원인 규명에 몰두한 자유주의 역사가도 과거 군주정의 영광을 동경한 보수적 역사가도 모든 책임을 파리 고등법원에게 돌렸다. 이렇게 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오랫동안 신분적 특권과 계급이익의 수호에 집착한 반동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자 군주정의 자기 갱생의 기회마저 봉쇄한 시대착오적이며 위선적인 집단으로 폄하되었다.

오늘날의 상식적 기준에서도 파리 고등법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군주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법기구에 불과한 파리 고등법원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신민의 대표가 아니라 세습적 특권을 누리던 법복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지팡이', '조국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군주권에 저항한 법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인민주권의 개념이 보급되기 시작한 18세기 중엽 이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중세 이래 수세기 동안 파리 고등법원을 지탱해준 힘은 전통과 관행이었다. 따라서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는 짧은 혁명의 시각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관습적인 사회였던 앙시앵 레짐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는 프랑스 군주정의 역사 그 자체이며 둘은 같은 전통 위에 서 있었다. 중세에 왕의 사법 자문기구로 왕의 법을 검토하고 토론을 벌이던 파리 고등법원이 왕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등기관과 간주권을 갖게 된 것도, 또 그러한 정치적 권한을 무기로 왕의 조세권에 간섭하고 종교문제에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것도 완만하게 변화한 군주정의 관행 속에서였다. 왕권강화과정에서 전통적 헌법주의로 무장한 파리 고등법원은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정적 편의주의에 맞섰다. 특히 재정문제에서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과 왕의 갈등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파리 고등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기존 사회 구조를 부정하거나 변혁을 시도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국가 구조와 신분질서를 군주권과 조화시키려는 이중성이야말로 파리 고등법원이 추구한 목표였다. 따라서 프랑스 군주정의 역사에서, 특히 정치적 혼란기에 정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며 군주권과 다툼을 벌인 파리 고등법원은 정치적 안정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군주권의 강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파리 고등법원의 태도는 광범위한 지지를 누리며 프랑스의 정치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 글의 첫 번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갈등과 대립관계로만 인식되어온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관계는 공생관계에서 출발했으며 오랫동안 타협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묘한 균형상태는 정치적 혼란을 겪은 16세기 종교내전기에 완성되었으며 그 기본 골격은 혁명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정치적 균형상태가 급속도로 결렬되고 마침내 모두의 붕괴로 귀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의 두 번째 강조점은 이러한 의문의 답에 있다. 전통과 관행에 의존해온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그 구성원인 법관들의 존재이다. 절대군주정의 형성과정에서 관직매매의 최대 수혜자이자 법복귀족으로 성장한 법관들은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정치사회적 엘리트 집단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그들은 루이 14세 시대를 거치며 정치무대 한가운데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더욱 부유하고 강력한 사회 집단으로 결집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다툼으로 점철된 18세기 정치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군주권에 저항한 법관들의 행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들의 집단적 권익이었다. 하지만 법관들의 태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전통을 과거의 정치적 권한을 회복하려는 귀족의 정체성과 결합시킨 법관들은 공적인 불만을 대변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논리와 개념을 제시했다. 물론 파리 고등법원은 18세기 이전에도 번번이 기본법의 수호를 주장하며 제한군주정의 이론을 언급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국왕의 입법권 자체를 문제 삼으며 정면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한 파리 고등법원의 저항은 점차 여론을 조성하며 주권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초래했다.

1970년대 이후 파리 고등법원이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였다.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새로운 정치문화, 그리고 저항의 이데올로기와 동력을 제공한 안센주의에 초점을 맞춘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연구는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유행한 새로운 정치사 연구는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 밀착해 들어가 소수의 법관들의 인적 조직망과 다수의 법관들을 조종하고 선동하고 방식, 그리고 법관들과 대신들의 치열한 파벌 다툼을 분석해내었다. 파리 고등법원과 군주권의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작동방식은 관직매매와 인신적 조직망에 의해 운영되어온 프랑스 군주정 고유의 정치구조에서 비롯되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하고 비대해진 군주정과 파리 고등법원의 싸움은 결국 모두의 기반을 허약하게 만들며 공멸의 길로 이어졌던 것이다. 새로운 정치사 연구가 구체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앙시앵 레짐 정치구조의 모순과 허약성이다. 최근의 연구를 토대로 파리 고등법원의 역사를 군주정의 역사 속에서 재구성한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파리 고등법원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제도들의 복합체였던 앙시앵 레짐 고유의 정치적 특성이자 모순 그 자체였던 것이다. (수원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0. 7. 2, 심사일자: 2010. 8. 4, 게재확정일자: 2010. 8. 11〉

주제어: 파리 고등법원(Parlement of Paris), 군주정(monarchy), 간주권(right of remonstrantion), 정치적 저항(political opposition), 안센주의(jansenism)

〈Résumé〉

**Le Compromis et l'opposition politiques:
l'histoire du Parlement de Paris**

Young-Lim LEE

Cet article a pour but de reconstituer l'histoire du Parlement de Paris sous l'angle de la relation entre le Parlement de Paris et le pouvoir monarchique sur les bases des études recentes. En premier lieu, il souligne que leur relation, longtemps considérée comme celle de conflits et d'oppositions, a commencé en réalité par la symbiose et a été maintenue dans le compromis. Dans l'histoire de la monarchie française, surtout dans la période des désordres politiques, le Parlement de Paris qui limitait le pouvoir arbitraire du gouvernement a contribué au renforcement du pouvoir monarchique par son rôle de stabilisateur politique. Cet équilibre singulier a été acquis pendant la guerre civile religieuse et cette structure subsistait jusqu'à la veill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n deuxième lieu, cet article souligne le succès politique et social des parlementaires et leur changement. Les parlementaires se sont développés grâce à la vénalité des offices et sont devenus le groupe d'élite comme la noblesse de robe dans le processus de la formation de la monarchie absolue. La principale cause d'opposition des parlementaires est donc de défendre leurs droits et intérêts. Mais leur attitude n'a pas cessé dans cette étape. Ils ont parlé pour les mécontentements publics et ont présenté la logique et la notion compréhensives sur leur rôle. Ainsi l'opposition des parlementaires a fait naître l'opinion publique et a entraîné le changement de la notion de souveraineté à partir du milieu de XIX^e siècle.

〈Summary〉

**The Political Compromise and Opposition:
the history of the Parlement of Paris**

Young-Lim LEE

This article aims to restructure the history of the Parlement of Paris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lement of Paris and the monarchical power on the basis of the recent studies. It underlines that their relationship, considered longtime just as conflicts and oppositions, has in fact originated from the symbiotic relation and compromise. In the history of French monarchy, in particular in the period of the political disorders, the Parlement of Paris that limited the arbitrary power of the government contributed to the reinforcement of the monarchical power by playing the role as the political stabilizer. This situation of singular equilibrium was achieved during the religious civil war and that structure had sustained until the ev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second point on which this article places emphasis is the political and social success and change of the *parlementaires*, members of the Parlement of Paris. The *parlementaires* grew up by purchasing official posts and became the elite group as the nobility of robe in process of the formation of absolute monarchy. Therefore, the principal cause of the opposition of *parlementaires* is to defend their rights and interests. But such an attitude of them didn't stop on that stage. They spoke up for public dissatisfactions and presented the logic and the notion on their role. The opposition of the *parlementaires* originated the public opinion and caused the change of the notion of sovereignty from the mid-19th Century.